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어르신과 직원 간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은 업무 수행 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4. 항상 상호 존중하며 존칭을 사용합니다.
5.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발언과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
7. 폭언,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 우리 순수요양원은 수급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며 상호협조 아래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합니다.
10. 우리 순수요양원은 수급자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수요양원